

202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

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< 변경 주요내용 >

- ① 자금별 규모 조정(경영안정자금 60억원↑,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종료)
- ②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(美 관세 피해·애로기업) 기준 조정 및 보증 담보기업 보증료 지원(일부은행)

2025. 9. 18.

세종특별자치시장

1. 지원규모 : 연간 550억원

(단위 : 억원)

자금구분	자금별 규모(연간)			대출금리 (변동)
	변경 전	변경 후	증감	
합 계	550	550	-	
창업	60	50	△10	3.75%
경쟁력강화	100	90	△10	3.75%
혁신형	100	80	△20	3.25%
기업회생	10	10	-	2.75%
경영안정	260	320	60	2~3%p 보전
긴급경영안정	20	-	△20	

- 경영안정지원자금 : 보증서 담보 대출 시, 보증액(대출금×보증비율) 기준 최대 1.2%(보증료율) 보증료 지원 ※ 은행별 상이하므로 지원대상 확인 필요

2. 지원대상

-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「별표1」의 '업종별 세부지원대상'과 「별표2, 4」의 '자금별 지원조건'에 해당하는 기업

※ 「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2」의 선정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50점 이상업체를 '적합업체'로 선정

3.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

-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, 휴·폐업중인 기업
-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,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이 주식지분의 30%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
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(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업)
- 정부,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, R&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(누적)을 초과하는 기업(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(<http://sims.go.kr>) 을 통해 확인)
-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*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 되지 않은 업체 (일부 중도상환 업체 포함)
 - 단, 중도상환 후 재융자 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

* `24년 신규 선정건부터 한도 적용

※ 경영안정자금은 기존과 동일 (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 추천 제외)

4. 지원조건 (자금별 세부지원 사항은 별표2 참조)

① 창업자금 : 50억원 규모

- 시설자금 : 20억원, 연리 3.75%,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
- 운전자금 : 4억원, 연리 3.75%,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

② 경쟁력강화자금 : 90억원 규모

- 시설자금 : 20억원, 연리 3.75%,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
- 운전자금 : 4억원, 연리 3.75%,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

③ 혁신형 자금 : 80억원 규모

- 5억원, 연리 3.25%,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

④ 기업회생자금 : 10억원 규모

- 5억원, 연리 2.75%,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

⑤ 경영안정자금 : 320억원 규모

- 5억원 /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10억원 (연간 매출액 범위 내)
- 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중 2.0%p 이자보전, 2년 거치 일시상환
※ 여성·장애인 기업은 1.0%p 추가보전
- ※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, 글로벌강소기업,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,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, 스마트공장 도입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, 여성친화기업, 세종에 만 1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,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은 1.0%p 추가 보전(1회 한정) / 인증 유효기간 내

※ 對美 수출 중소기업 중 미 관세부과 영향기업 1.0%p 추가 보전('25년 한시/1회 한정)

《 경영안정자금 은행별 추가 지원 안내 》

- 세종시-**IBK기업은행** “동행지원 협약대출”
 - (대상)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신용(기술)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하는 기업
 - (지원)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 지원(**보증료율 최대 1.2%p 인하**)
※ 보증료는 기업은행-신용(기술)보증기금 간의 협약에 따라 지원 / 중도상환 수수료 있음
- 세종시-**하나은행** “세종 기업사랑 우대금리”
 - (대상)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신용보증 기금·재단 보증을 담보로하는 기업
 - (지원) **대출 우대금리(0.8%p 인하),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 지원(보증료율 0.2%p 인하)**

◆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(※ 기업은행 “동행지원 대출”은 예외)

《주의사항》

-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**휴업·폐업** 또는 세종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**자금지원이 중단됩니다.**
-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(약정)에 의합니다.
- 상기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**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** 시에는 별도 공고에 의해 **분기별 대출 금리를 조정** 할 수 있습니다.
- 경영안정자금 실행 후 **타은행으로 변경(대환)** 불가합니다.
-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는 **자금 지원 중단 및 지원 제외(3년간)**
- 자금 사용 완료시, 1개월 내 **사업보고서** 필수 제출
- **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 확인 시, 자금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등이 발생합니다.**

5. 신청 및 접수

접수기관 및 문의처	접수기간
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◦ (문의처) ☎ 044-251-3214 ◦ (주 소) (30098)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,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(도담동)	~ 2025. 12. 10. (자금 소진시까지)

○ 신청 시 구비서류

- ① 자금용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 - 창업자금, 경쟁력강화자금, 혁신형자금 → (별지 제1호) 서식
 - 경영안정자금, 기업회생자금 → (별지 제2호) 서식
- ② 공장등록증(공장면적 500㎡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)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
- ③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(1년이상 사업체,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)
-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(전년도)
- ⑤ 시설계약서,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(별표3 참조)
- ⑥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(별지 제3호)
- ⑦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(별지 제6호)
- ⑧ 미국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(별지 제7호)

○ 시행완료 후 제출서류

-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(별지 제9호)

6. 융자대상자 선정

- 방 법 : 시 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함
- 통 보 : 15일 이내(신청서 접수일로부터)
- 자금별 융자 취급 은행

『 ①~④ 창업 외 4개 자금 협약은행(7개) 』

- | | | |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‣ 하나은행 | ‣ 신한은행 | ‣ 기업은행 | ‣ 국민은행 |
| ‣ 농협은행 | ‣ 우리은행 | ‣ 산업은행 | |

『 ⑤~⑥ 경영안정자금 협약은행(11개) 』

- | | | |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‣ 하나은행 | ‣ 신한은행 | ‣ SC제일은행 | ‣ 신협은행 |
| ‣ 농협은행 | ‣ 우리은행 | ‣ 전북은행 | ‣ 수협은행 |
| ‣ 기업은행 | ‣ 국민은행 | ‣ 새마을금고 | |

※ 단, "지역농업협동조합", "신용협동조합", "새마을금고"는 세종시 소재 지점에 한함

【별표 1】

업종별 세부지원대상

※ 공통적용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의 중소기업

지원업종	세 부 지 원 대 상 업 종
제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조업 전업률이 30%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제조시설면적 500m²미만 소기업은 건축법에 따른 제2종근린 생활시설 및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※ 품목코드 33402, 33409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오락용품 제조업은 제외 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○ 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」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
건설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식 산업센터 건설사업자
지식 서비스 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산업발전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,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4, 5 참고

- ※ 상기 업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
- ※ 상기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대상(단, 제조업 영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)

【별표 2】

자금별 지원조건

1. 창업자금.경쟁력강화자금

종 류	시 설 투 자 자 금	운 전 자 금
융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공장 및 건축 소요자금 ◦ 공장의 신설, 증·개축 소요자금 및 부지매입 비용 ※ 부지매입비는 공장 건축허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◦ 기계설비 등 생산(서비스) 시설의 신규 구매·개체 소요자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시설투자 자금으로 설치된 시설의 운전자금 또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
융자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20억원 이하 (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가능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4억원 이하 (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가능)
융자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8년 이내(3년 거치, 5년 균분상환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5년 이내(1년 거치, 4년 균분상환)
융자금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연리 3.75% * '25.1.10일자 신규대출부터 '25년 대출금리 적용 	
대출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	
비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인 기업만 해당 	

2. 혁신형 중소기업자금

종 류	시설 및 운전자금
융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벤처·이노비즈(Inno-Biz)·메인비즈(Main-Biz)·우수신제품(NEP) 및 신기술(NET) 인증 기업 ◦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·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◦ 최근 3년 이내 대학·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◦ 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기술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성공 판정을 받고 사업화하려는 기업
융자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5억원 이하 ※ 건당 1회
융자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5년 이내(2년 거치, 3년 균분상환)
융자금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연리 3.25% * '25.1.10일자 신규대출부터 '25년 대출금리 적용
대출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

3. 기업회생자금

종 류	운 전 자 금
융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의 3%이상 피해를 입은 기업 (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(읍·면·동장)으로부터 재해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) 기업구조조정, 장기노사분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
융자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억원 이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생산에 필요한 원·부자재 구입비, 기타 기업경영 소요 경비 근로자 임금지급에 소요되는 자금 등
융자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년 이내(1년 거치, 2년 균분상환)
융자금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리 2.75% * '25.1.10일자 신규대출부터 '25년 대출금리 적용
대출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

4. 경영안정자금

종 류	운 전 자 금
융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한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기업 중, 해당 업종 전업률 30% 이상, 최근 3개년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기업
융자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~10억원 이하(연간 매출액 범위 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반기업 5억원,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이상 기업 10억원
융자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년 거치 일시상환
융자금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(변동금리)중 2.0%p 이차보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.0%p 추가 보전 / 1회 한정)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기업('23년 이후), 글로벌강소기업,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,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우수기업, 스마트공장 도입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, 여성친화기업, 세종에 만 1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,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※ 인증 유효기간 내 (1.0%p 추가 보전 / '25년 한시 1회 한정) <u>對美 수출 중소기업 중 미관세 부과 영향 기업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직접피해) 최근 6개월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필수증빙 : 수출실적증명서(수출 품목 및 국가 명시 필수,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) (간접피해) 관세 부과로 인한 경영애로 발생 기업(수출실적 무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필수증빙 :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
대출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
비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은 추천 제외

【별표 3】

가점 및 감점부여 대상 기업

가. 가점대상

- ① 「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」 제9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(5점)
 - ②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(여성기업 확인서 첨부)(5점)
 - ③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(장애인기업 확인서 첨부)(5점)
 - ④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(5점)
 - 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(3점)
 - ⑥ 법인의 경우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(생산공장) 모두를 두는 기업(5점)
 - ⑦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소기업(2점)
 - ⑧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(3점)
 -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(5점)
 - ⑩ 중소기업육성 유공 관련 정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표창 수상 기업(5점)
 - ⑪ 세계일류상품 육성기업 및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사업 참여기업(3점)
 - ⑫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(3점)
 - ⑬ 중소기업육성시책(해외시장개척, 수출기업인협의회 등) 참여기업(5점)
 - ⑭ PL보험 가입기업(2점)
 - ⑮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(5점)
 - ⑯ K, KC, GR, ISO9000:14000, TS16949 인증기업(3점)
 - ⑰ ANSI, BSI, CE, CSA, e-마크, ECO, GOST, FCC, FDA, GS, IEC60068-2-27, JIS, PSE, SASO, S-마크, UL, VDE 등 외국규격 인증기업(3점)
 - ⑯ 정부로부터 녹색기업인증을 받은 기업(5점)
 - ⑯ 세종특별자치시 품질경영교육을 받은 기업(교육필증 첨부)(5점)(1회로 한정한다)
 - ⑰ 지역인재 채용기업
 -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 중 지역인재(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) 3명 미만(3점)
 -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 중 지역인재(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) 3명 이상(5점)
 - ⑰ 스타기업, 지역혁신선도기업, 나눔명문기업 선정기업(3점)
 - ⑰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한 방침(공고)에 따른 기업
- * 최대 10점의 범위에서 각 항목별 중복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나, 같은 항목 내에서 중복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

나. 감점대상

- ①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%이상 95%이하(-5점)
- ②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%미만(-10점)
- ③ 기타 시장이 정한 방침(공고)에 따른 기업

【별표 4】

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원대상 세부 업종

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(산업발전법 시행령 '22.7.5. 개정)

* 노란음영 : 지원업종

해당업종	산업분류번호
○환경 정화 및 복원업	E39
○도매 및 상품중개업	G46
○전자상거래업	G47911
○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	H52991
○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	J581
○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J582
○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	J5911
○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	J5912
○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	J59201
○전기통신업	J612
○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J62
○정보서비스업	J63
○연구개발업	M70
○법무관련 서비스업	M711
○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	M712
○광고업	M713
○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	M714
○경영컨설팅업	M71531
○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	M72
○수의업(獸醫業)	M731
○전문디자인업	M732
○번역 및 통역서비스업	M73902
○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	M73903
○물품감정, 계량 및 견본 추출업	M73904
○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73909
○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	N74100
○보안시스템 서비스업	N75320
○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	N75991
○전시 및 행사 대행업	N75992
○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(신용정보를 수집·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)	N75993
○포장 및 충전업	N75994
○온라인 교육 학원(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	P85503
○기술 및 직업훈련학원	P8566
○병원	Q861
○의원	Q862
○기타 보건업(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)	Q869

【별표 5】

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원제외 업종

<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준용 >

※ 주황음영 :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해당

업종 분류	산업분류코드 (KSIC)	융자제외 업종
제조업	33402 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건설업	41 ~ 42	건설업(단,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(41225), 환경설비 건설업(41224), 조경 건설업(41226), 배관 및 냉·난방 공사업(42201), 건물용 기계·장비 설치 공사업(42202), 방음, 방진 및 내화 공사업(42203), 소방 시설 공사업(42204), 전기 및 통신공사업(423)은 지원가능 업종)
도매 및 소매업	46102 中	담배 중개업
	46~47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,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, 주류, 담배 소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(단,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)
	47859 中	성인용품 판매점
	47993 中	다단계 방문판매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정보통신업	58 中	경마, 경륜,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,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	59142	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
정보서비스업	63999 中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(63999-1)
금융 및 보험업	64 ~ 66	금융 및 보험업(단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(66199)은 지원 가능)

부동산업	68	부동산업
전문서비스업	711~2	법무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
	7151	회사본부
수의업	731	수의업
사업 지원 서비스업	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
	75999 中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
임대업	76390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84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교육서비스업	851~854	초·중·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
	855~856 中	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
보건업	86	보건업 (단,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)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	9124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협회 및 단체	94	협회 및 단체 (단, 「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」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)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
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	97 ~ 98	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
국제 및 외국기관	99	국제 및 외국기관

*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용자 제외

** 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소상공인은 용자 제외

【별지 제1호】

중소기업(자금명 :			자금 신청서		[] 시설투자 [] 운전자금			
업체명		설립일			대표자			
법인등기번호								
사업자등록번호	(확인자 :)			산업분류번호				
본사	(우편번호)	주소 :			전화	<input type="checkbox"/> 자가 <input type="checkbox"/> 임차		
					FAX			
공장	(우편번호)	주소 :			전화	<input type="checkbox"/> 자가 <input type="checkbox"/> 임차		
					FAX			
면적	대지 : 공장 :	m^2	m^2	용도지역	(전용공업, 공업, 준공업, 상업, 주거지역)기타지역()			
연락처	담당자		휴대폰		전화(FAX)			
홈페이지주소				담당자 E-mail				
종업원수	생산직 명, 사무직 명			주생산품				
자산총액	백만원	부채	백만원	자본금액	백만원			
총매출액	백만원			수출액	천불			
				신청액	계		백만원	
					소요자금	백만원	시설투자금	백만원
					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	백만원	운전자금	백만원
					(자금)		(자금)	백만원
벤처기업번호	부채비율	건축허가번호						
		담보제공방법	부동산, 신용보증서, 기타()					
대출은행 협의내용	은행 (담당:)	지점	대출가능() 대출불가()	보증기관 협의내용	보증기금(담당) 보증재단(담당)	보증가능() 보증불가()		

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.

신청인(대표) 년 월 일 (인)

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

첨부서류	신청인 제출서류	
	1. 사업자등록증 2. 공장등록증(공장면적 500 m^2 미만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) 3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에 한함) 4.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.	5. 시설견적서 또는 계약서(외국산인 경우 offer sheet) 및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. 6. 직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7.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. 8.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관련 증빙자료(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, 기술자격, 수출실적 등) 각 1부.

※ 주의사항

1. 응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응자받은 업체의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실을 다른 시·도로 이전한 경우 등에는 응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2.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사 업 계 획 서

1. 사업계획(용자금으로 추진하려는 계획 등 기재)

-
-
-

※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

2. 업체개요

년 월 일	연 혁	비 고

※ 회사설립, 연혁 등을 기재

3. 대표자 인적사항

성명	한글(), 한자()		자 택 전화번호	
학력	기 간	학 교 명	전 공 분 야	수학 상태
	~	()대 학 교		졸업(), 중퇴()
	~	()고등학교		졸업(), 중퇴()
경력	기 간	기 업 체 명	주 생 산 품 목	담당업무(직위)
	~			
	~			
	~			
포 상 (업체포상 포함)		수 여 기 관 명	포 상 명	분 야

4. 공장 규모 등

공장 규모(소유)	공장 등록	미등록시 이전계획
대지 m^2 자가(), 임차()	등록()	이전시기 :
건물 m^2 자가(), 임차()	미등록()	이전장소 :

5. 주요 보유시설

(단위 : 백만원)

시설명	규격	수량	설치년도	구입금액
합계				

6. 규격표시 획득 현황

규격표시명	허가(승인)품목	허가(승인)번호	승인기관	허가(승인)일자

주) 규격표시명 : KS, JIS, CE등 국내·외 규격, 검, Q Mark등 품질인증, 전·열등형식승인 등

7.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

종류	고안의명칭	등록번호	등록일	발명자(고안자)	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자	전용 실시권자

8. 기술인력 보유현황

직 위	성 명	이공계 전공학과	기술자격	등록기관

※ 기술자격 기재(기술사, 기능장, 기사 1·2급, 기능사 등)

9. 제품개요 및 판매전망

제품의 개 요	
판 매 전 망	

※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

10. 주요 거래처(매출)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업 체 명	대표자	거래품목	거래금액 (비율%)	거래기간	거래조건

※ 창업업체는 실적이 없을 경우 계획을 작성

11. 판매실적

(단위 : 백만원)

품 목	전년도(전기)		신청년도(당기)		다음년도(차기)	
	수 량	금 액	수 량	금 액	수 량	금 액
국 내						
수 출						
합 계						

※ 창업업체는 실적이 없을 경우 계획을 작성

12. 시설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주) 합계금액은 신청서상 자금신청금액의 시설금액과 근사치로 작성

13. 회사약도 및 책임자

1. 업체명 : (주) _____ (대표자 : _____)

2. 책임자 : _____ (직위: _____)

3. 전화번호(휴대폰, 연락처 등) :

4. 회사약도

【별지 제2호】

경영안정 · 기업회생지원자금 신청서

업체명				사업자 번호	
소재지				사업자등록일	
대표자				전화번호	
자금담당자			휴대폰	이메일	
용자 신청액	일반	백만원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특별	백만원			
자금용자 희망조건	· 2년 거치, 일시상환			· 시 이자보전 연리2.0%	
기업 형태 (해당란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용자금액 구분 : 일반기업(), 수출기업() 이자보전 구분 : 여성기업(), 장애인기업(), 녹색기업(), 고용창출우수기업(), 기타 기업() 				
자금 용도	원료구입, 기계보수, 노임 지불, 기타()				

《경영현황》

업종	주요 생산품	연간 생산액		
공장 장지	개별, 산업·농공단지명()	상시 근로자	생산직 사무직	명명
자산 총액	백만원	자본금	백만원	부채
대출 은행	은행	지점 (주소 :)		백만원

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경영안정(기업회생지원)자금을 용자신청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 : (인)

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

첨 부 서 류	신청인 제출서류	
	1. 사업계획서 1부.(별첨 양식) 2. 사업자등록증 3. 공장등록증 (공장면적 500㎡미만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) 4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에 한함)	5.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. 6. 직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7.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. 8.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관련 증빙자료 (지적재산권 사본, 기술자격, 수출실적 등) 각1부.

※ 주의사항

1. 응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응자받은 업체의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실을 다른 시·도로 이전한 경우 등에는 응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2.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경영안정·기업회생 자금 사업계획서

- 사업기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- 사업개요 :
- 세부사업별 소요자금
 - 시설자금 :
 - 운전자금 :
 - .재료비
 - .인건비
 - .일반관리비
- 소요자금 조달방법
 - 자기자본 :
 - 융자 :
 - 사채 :
 - 기타 :
- 응자금 상환계획
- 기 타

【별지 제3호】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□ 목적

-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“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관리시스템”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·조회 및 활용
-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, 지원효과 분석,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·관세청·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·활용

□ 수집·조회 및 활용 정보

- (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)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, 납입자본금, 자산총액, 부채총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및 창·휴·폐업일,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,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,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

□ 수집·조회 및 활용 기관

-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

□ 동의 효력기간

-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

* 제공된 목적달성을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

- 기업정보 수집 시점 :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

*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

※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·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25년 월 일

기업명 ○○○

대표자 ○○○ (인)

※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·조회·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,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.

【별지 제4호】 삭제<2025. 9. 18.>

【별지 제5호】 삭제<2025. 9. 18.>

【별지 제6호】

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

본인은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 유의사항 및 자금 지원 기준을 확인하였고, 자금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1. 원활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, 서류가 누락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2.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3.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 확인 시, 자금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등이 발생합니다.

2025. . .

(신청인) 기업명 : (인)

주소 :

대표자명 : (인)

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

【별지 제7호】

미국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

1. 회사개요 및 융자신청액

업체명		사업자번호	
업종		주요제품	
주 거래처	국내		
해외			

융자 신청 금액 백만원

2. 경영애로(피해) 내용 *필수기재

피해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영향(직접수출) <input type="checkbox"/> 간접영향(직접 또는 간접수출)
간접피해 품목	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차 <input type="checkbox"/> 반도체 <input type="checkbox"/> 철강 <input type="checkbox"/> 알루미늄 <input type="checkbox"/> 의약품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
경영애로 내용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조(매입)원가 급등 <input type="checkbox"/> 제(상)품 가격경쟁력 하락 <input type="checkbox"/> 생산량 감소 <input type="checkbox"/> 매출액 감소 <input type="checkbox"/> 거래량(거래처) 감소 <input type="checkbox"/> 재고량 증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

관세 부과에 따른 경영애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 *필요시 별지 작성

※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진흥원에서 현장실사 및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* 수출실적 증명서, 계약서 등 경영애로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

상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(수출실적증명서, 기타 증빙서류 등)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
화약하며, 허위 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향후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지원중단
(이차보전 중단, 대출금 상환 등) 등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25년 월 일

대표자 :

기업명 : (서명 또는 인)

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

【별지 제8호】 삭제

【별지 제9호】

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

1. 업체 현황

업체명		대표자	
사업자등록번호		법인등록번호	
사업장 소재지		담당자	
고용인원/매출	명 / 백만원	연락처	사무실
주생산품			핸드폰

2. 자금 선정 및 실행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지원년도	융자 추천 금액			대출 실행 금액(업체)			대출실행일	비고
	계	시설	운전	계	시설	운전		

3. 시설설치 내역(시설자금 이용업체만 기재)

(단위 : 백만원)

시설명	규격	수량	금액	시설업체명	추진기간

4.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효과 및 추진상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자금실행 전	자금실행 후	증감 효과
매출증가			
고용인원			
생산성			
기타()			

20 년 월 일

대표자 (인)

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